

「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 개정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제1조 ~ 제6조 <생략> 제7조 (결제서비스의 이용) ① 이용자는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마스터 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거래를 결제하는 결제자를 지정하여 다단계 결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②<생략> ③<생략> | 제1조 ~ 제6조 <작동> 제7조 (결제서비스의 이용) ① 이용자는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마스터 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거래를 결제하는 결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결제서비스 방식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는 실행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. ②<작동> ③<작동> | 결제서비스 방식에 '실행자 한도 차감방식'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결제서비스의 이용 및 거래지시 처리 기준 반영 |
| 제8조~제11조<생략> | 제8조~제11조<작동> | |
| 제12조 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<생략> 1.<생략> 2.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결제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결제비밀번호 혹은 일회용비밀번호(OTP) 및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거래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. | 제12조 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<작동> 1.<작동> 2.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결제자 또는 실행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결제비밀번호 혹은 일회용비밀번호(OTP) 및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거래지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. | |
| 제13조~제26조<생략> | 제13조~제26조<작동> | |